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연구사 1명)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국 밑에 산림교육치유과를 폐지하면서 숲길·등산 및 산림레포츠 분야의 현안 대응을 위하여 2026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을 폐지하며, 산림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

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산지정책과”를 “산림복지교육과·산림휴양치유과·산지정책과·숲길등산레포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복지정책과장”을 “산림복지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관리
6.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관리 및 육성
9.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조정
10.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교육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의 조성·지정 및 지도·감독
12.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한 지도·감독

1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지정 및 관리
17.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18. 국민의 숲 지정·운영
19.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조정
3.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감독
4. 산림휴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6.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7.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산림치유 제도 운영
8. 치유의 숲 조성·운영 및 지도·감독
9.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1. 귀산촌 정책의 개발·지원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3. 국가숲길 지정 및 운영·관리
4. 동서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5. 숲길등산지도사 배치·운영
6.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7. 산악구조대 운영·관리
8. 등산·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9.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1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11.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제9조제4항 중 “도시숲경관과·정원팀”을 “도시숲경관과·수목원정원 정책과”로 하고, “서기관으로, 팀장 및”을 “서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관리
6.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8. 보호수의 지정·관리
9.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10.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11.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1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3.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4. 숲사랑 운동의 추진
1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6. 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지원
1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19.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팀장”을 “수목원정원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내·외 한국정원 조성 및 관리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수목원 · 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 · 관리

11.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 · 감독

12. 국립 · 사립수목원의 육성 · 지원

제13조제1항 중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및 제주산림항공관리소”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2명(5급 1명, 6급”을 “1명(5급”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317”을 “316”으로 하고, 전산주사 “3”을 “2”로 하
며, 소방공무원 계 “3”을 “4”로 하고, 소방경 “3”을 “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직 계 “329”를 “328”로 하고, 전산주사 “3”을 “2”로 하
며, 소방공무원 계 “3”을 “4”로 하고, 소방경 “3”을 “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1”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9”를 “7”
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6”을 “7”로 하고, 운전서기 “3”을 “4”로 하며, 운
전서기보 “20”을 “2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9”를 “231”로 하
며, 방송통신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9”를
“7”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6”을 “7”로 하고, 운전서기 “3”을 “4”로 하며,
운전서기보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34”를 “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3”으로 하

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4 중 총계 “35”를 “34”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46”을 “7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40”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61”을 “16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20”을 “119”로 하며, 공업서기 “6”을 “7”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4”로 하며, 운전서기보 “25”를 “22”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753”을 “747”로 하고, 일반직 계 “753”을 “747”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58”을 “157”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9”를 “118”로 하며, 공업서기 “5”를 “6”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1”을 “10”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20”을 “17”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58”을 “2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58”을 “256”으로 하며, 4급 이하 “253”을 “25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02”를 “1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2”를 “100”으로 하며, 5급 이하 “101”을 “99”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동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남부지방산림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서부지방산림청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중부지방산림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별표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지 방	국유림 관리소		
북 부	춘 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화천군·철원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홍 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서 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과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수 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인 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민 북 지 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화천군·철원군·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동 부	평 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 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양 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영 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 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삼 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하장면을 제외한다)·동해시
	태 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

			에 한한다)
남 부	영 주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 영주시 · 문경시 · 의성군 · 예천군 · 봉화군
	영 덕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경상북도 포항시 · 경주시 · 영천시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구 미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김천시 · 구미시 · 상주시 · 경산시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울 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경상북도 울진군 · 울릉군
	양 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 함안군 · 창녕군
서 부	정 읍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김제시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완주군
	무 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영 암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 나주시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장흥군
	순 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함 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경상남도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거제시 · 의령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중 부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증평군
	보 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단 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충청북도 제천시 · 단양군
	부 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부여

		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시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② (생략)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u> 14. <u>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u> 15. <u>산림약용자원의 육성·지원</u> 16. <u>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 및 평가</u> 17.·18. 삭제 19. (생략) ④ ~ ⑨ (생략) 제8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② 산림복지국에 <u>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회·산지정책과</u>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산림복지교육과·산림휴양치유회·산지정책과·숲길등산레포츠팀</u> ----- ----- ----- ----- ----- -----

다.

③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관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7.·8. (생략)

9.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1. 귀산촌 정책의 개발·지원

12.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조정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

③ 산림복지교육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관리

6.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관리 및 육성

7.·8. (현행과 같음)

9.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조정

10.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교육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 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의 조성·지정 및 지도·감독

12.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한 지도·감독

1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조정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4.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
5.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6. 등산·트레킹 교육을 위한 등산 학교 운영
7.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8.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성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지정 및 관리
17.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18. 국민의 숲 지정·운영
19.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조정
3.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감독
4. 산림휴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6.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7.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활성화

9.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 · 관리

10. 숲길등산지도사 배치 · 운영

11.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 · 관리 및 운영

12. 산악구조대 운영 · 관리

13.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 지정 및 관리

14.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 · 보존 및 창달

15. 국민의 숲 지정 · 운영

<신 설>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8. 치유의 숲 조성 · 운영 및 지도 · 감독

9.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0.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1. 귀산촌 정책의 개발 · 지원

⑥ 숲길등산레포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숲길의 조성 ·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 · 관리

3. 국가숲길 지정 및 운영 · 관리

4. 동서트레일 조성 및 운영 · 관리

5. 숲길등산지도사 배치 · 운영

6.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 · 관리 및 운영

7. 산악구조대 운영 · 관리

8. 등산 · 트레킹 교육을 위한

⑦ (생 략) ⑧ (생 략)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생 략)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생태복원과 · <u>도시숲경관과 · 정원팀</u>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으로</u>, 팀장 및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u>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도벌 · 무허가벌채의 예방 · 단속</u> 2. <u>불법산지전용의 단속</u>	<u>등산 학교 운영</u> 9. <u>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u> 10. <u>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u> 11. <u>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및 운영 · 관리</u>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도시숲경관과 · 수목원 정원정책과</u> ----- ----- -----<u>서기관으로</u>, ----- ----- ----- -----. ⑤ <u>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 시행</u> 2. <u>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관</u>
---	---

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5. 보호수의 지정·관리
 6.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8의2.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1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2.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1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15. 공립·사립수목원의 육성·지원
 15의2. 삭제
 16. 숲사랑 운동의 추진

리
 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관리
 6.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8. 보호수의 지정·관리
 9.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10.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11. 산림정화구역의 지정·관리
 1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3.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4. 숲사랑 운동의 추진
 1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6. 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지원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 ⑩ (생 략)

⑪ 정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생 략)

1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19.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수목원정원정책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8. 국내·외 한국정원 조성 및 관리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11.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12. 국립·사립수목원의 육성·지원

⑫ (현행과 같음)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원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317</u>		<u>316</u>	-1	
		•		•	•		
		•		•	•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소방공무원	계		<u>3</u>		<u>4</u>	+1	
소방경			<u>3</u>		<u>4</u>	+1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329</u>		<u>328</u>	-1	
		•		•	•		
		•		•	•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소방공무원	계		<u>3</u>		<u>4</u>	+1	
소방경			<u>3</u>		<u>4</u>	+1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9</u>	<u>231</u>	+2
일반직 계	<u>229</u>	<u>231</u>	+2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2</u>	<u>3</u>	+1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9</u>	<u>7</u>	-2
·	·	·	
·	·	·	
방송통신서기	<u>6</u>	<u>7</u>	+1
·	·	·	
·	·	·	
운전서기	<u>3</u>	<u>4</u>	+1
운전서기보	<u>20</u>	<u>21</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9</u>	<u>231</u>	+2
일반직 계	<u>229</u>	<u>231</u>	+2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2</u>	<u>3</u>	+1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9</u>	<u>7</u>	-2
·	·	·	
·	·	·	
방송통신서기	<u>6</u>	<u>7</u>	+1
·	·	·	
·	·	·	
운전서기	<u>3</u>	<u>4</u>	+1
운전서기보	<u>19</u>	<u>20</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u>	<u>33</u>	-1
일반직 계	<u>34</u>	<u>33</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4</u>	<u>3</u>	-1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u>	<u>34</u>	-1
일반직 계	<u>35</u>	<u>34</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4</u>	<u>3</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6</u>	<u>740</u>	-6
일반직 계	<u>746</u>	<u>740</u>	-6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61</u>	<u>160</u>	-1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20</u>	<u>119</u>	-1
·	·	·	
·	·	·	
공업서기	<u>6</u>	<u>7</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5</u>	<u>14</u>	-1
운전서기보	<u>25</u>	<u>22</u>	-3
기계운영서기	<u>3</u>	<u>2</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3</u>	<u>747</u>	-6
일반직 계	<u>753</u>	<u>747</u>	-6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58</u>	<u>157</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9</u>	<u>118</u>	-1
·	·	·	
·	·	·	
공업서기	<u>5</u>	<u>6</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1</u>	<u>10</u>	-1
운전서기보	<u>20</u>	<u>17</u>	-3
기계운영서기	<u>3</u>	<u>2</u>	-1
·	·	·	
·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58</u>	<u>256</u>	-2
일반직 계	<u>258</u>	<u>256</u>	-2
·	·	·	
·	·	·	
4급 이하	<u>253</u>	<u>251</u>	-2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2</u>	<u>100</u>	-2
일반직 계	<u>102</u>	<u>100</u>	-2
·	·	·	
5급 이하	<u>101</u>	<u>99</u>	-2